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0.01.27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“다음과 같다.” 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.” 로 함. (안 제3조)

나. “구매·생산 촉진시책” 을 “구매 촉진시책” 으로 함. (안 제5조 제목)

다. “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” 를 “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” 로 함.
(안 제5조제1항)

라. “구매·생산 촉진 시책에는” 을 “시책에는” 으로, “포함한다.” 를 “포함할 수 있다.” 로 함. (안 제5조제2항)

마. “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 으로 함. (안 제5조제2항제5호)

바. “구에서 출연한 기관, 학교법인, 종교·체육시설, 산업계” 를 “학교법인, 종교시설, 체육시설 및 관내기업” 으로 함. (안 제12조제1항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다음과 같다.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.”로 한다.

안 제5조 제목 중 “구매·생산 촉진시책”을 “구매 촉진시책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”를 “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“구매·생산 촉진 시책에는”을 “시책에는”으로, “포함한다.”를 “포함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

안 제12조제1항 중 “구에서 출연한 기관, 학교법인, 종교·체육시설, 산업계”를 “학교법인, 종교시설, 체육시설 및 관내기업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</p> <p>제3조(적용대상 기관) 이 조례의 적용 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 촉진시 책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「친 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 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 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·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구매·생산 촉진 시 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</p> <p>제12조(친환경상품 구매 문화 증진)</p> <p>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에서 출 연한 기관, 학교법인, 종교·체육시설,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 매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</p> <p>제3조(적용대상 기관) ----- -----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 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-----시책에는----- -----포함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</p> <p>제12조(친환경상품 구매 문화 증진)</p> <p>① ----- -----학교법인, 종교시설, 체육시설 및 관내기업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원안과 같음)</p>